

제352회 정례회
2016. 12. 5.(월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
수석전문위원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윤은희 의원 등 7인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22일

○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3일

3. 개정이유

○ 하위규정 인용 항(項)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

4. 주요내용

가. 약칭 사용 위치 변경 (안 제1조)

- 제1조의 약칭을 제2조로 변경

나. 하위규정 인용 항 변경 (안 제6조)

- “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에 따름”

⇒ “~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”

다.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

(안 제4조, 제7조, 제9조)

- “기타” 를 “그 밖에” 로 변경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하위규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권장 용어로 변경한 것임.
-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 - 안 제1조에서는,
약칭 사용은 통상 목적조문(제1조)에서는 조례/규칙의 제명 외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바, “충청북도”에 대한 약칭을 제2조로 옮기고,
 - 안 제6조에서는,
상징물 사용에 있어 ‘충청북도 이미지형성 디자인 매뉴얼’에 따르면 한 규정은 매뉴얼이 행정규칙 성격인 바, 일반적으로 상위법령에서는 하위법령을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를 “~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”로 수정한 것으로 타당함.
 - 안 제 4, 7, 9조에서는,
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“기타”를 “그 밖에”로 수정하였고,
 - 안 제12조에서는,
불필요한 문장을 삭제하여 간결하게 명기하였음.
- 본 개정안은 법적 문제가 없으며 타당하다고 사료됨.